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2월 14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2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2월 25일

제1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이 홍 희

나. 제안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062호, 2011.09.16 공포, 2012.03.17시행) 제30조 제8항에서 위임한 구미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원회의 임기 및 기능(안 제3조,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안 제2조, 제5조)
 - 구성 : 10명 이내(위원장은 시장)
 - 위원 : 구미시 5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 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입법예고 : 2013. 1. 16 ~ 2. 5(20일간)(의견없음)
-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됨.(2013.2.12)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희 철

-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062호, 2011.09.16 공포 2012.03.17 시행) 제30조 제8항에서 위임한, 구미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2조 부터 제73조에 규정한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임.
-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10명 이내(위원장은 시장)이며,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해당사업지구의 읍·면·동장,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하였음.
- 본 위원회의 기능은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중요한 역할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임.
- 위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